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92
----------	-----

2009년 6월 2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6월 11일, 이국희 의원 외 30인 발의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09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국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2008.3.21)됨에 따라 인용조문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현재 규칙에 정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타 기금 관련 조례와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하면서 심의회 위원 자격에

나.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를 명문화 함 (안 제2조)
- 기금 관리운영권자를 도시교통본부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교체하고,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제64조를 전부개정 에 맞추어 도로법 제76조로 함 (안 제4조)
-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고, 위원의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위원정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 8조~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안석수)

□ 주요사안에 대한 검토의견

■ 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안 제2조 및 제3조)

- 등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영권자를 도시교통본부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립의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권자를 상향조정한 것은, 서울시가 운영중인 다양한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 고려의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하고, 조례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한 것도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에 대한 의견(안 제8조 및 제9조)

-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중 심의대상과 심의회의 구성원 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위촉위원의 임기나 회의의 의결방식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어 등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규칙사항을 조례로 이동·신설코자 한 것임.

- 서울시가 운용 중인 15개 기금 중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규칙이 아닌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¹⁾

등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정하는 것은 심의회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등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회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2명을 추가하여 위원 정수를 현행 10인에서 12인으로 상향조정하였는바,

서울시가 운영중인 기금관련 심의회의 평균 위원수가 12명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등 심의회의 위원으로 시의원을 참여토록 한 것

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 참고 : 기금별 심의회 운용현황

기금수	위원장		심의회 구성 현황					시의원 참여 규정 명시된 조례 수
	부시경	산관위원	계	여성	10인이하	11~13인	14인이상	
15	4	11	15	2	6	3	4	9

■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

- 등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이 2008. 3. 21 전부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동시에 현행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삭제 조문 등을 정비하고 있는 바,

조례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이해도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등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2005/>) 검색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2
----------	-----

발의년월일 : 2009년 6월 11일
발의자 : 이국희 의원 외 30인

1. 제안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08.3.21)됨에 따라 인용조문번호를 정비하는 한편,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에 관한 규정의 명문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과 현행 규칙에 정하고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타 기금 관련 조례와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규정하면서 심의회 위원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신설하여 기금 운영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 나.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를 명문화 함 (안 제2조)
- 다. 기금 관리운용권자를 도시교통본부장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교체하고, 기금의 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라.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제64조를 전부

개정에 맞추어 도로법 제76조로 함 (안 제4조)

- 마. 현행 규칙에서 규정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규정토록 하고, 위원의 자격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추가하는 동시에 위원정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확대함 (안 제8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도로법」 제7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굴착 등에 따른 도로의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징수하는 도로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6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임명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소관부서의 4급이상 공무원(자치구 공무원을 포함한다)
- 3 기타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중 단위사업비가 10억원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